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·반설치조례 개정 청원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1동 570-3 이정규외 21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·반설치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청원의 요지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 현 조례의 규정은 지역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임기가 너무 짧으므로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.

○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

- 2001.1.9 개정된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·반설치조례는 “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고”, “세계화시대에 발맞추려면 연령은 낮아져야 한다”는 의견에 따라 연임의 제한과 연령의 하향 제한을 하였으며, 시대의 변화에 따른 타당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, 서울특별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 모두 임기는 2년이고, 연임횟수에 제한이 없는 구가 16개구, 2회에 한하는 구가 6개구, 1회에 한하는 구가 우리구를 포함하여 3개 구이며

- 본 청원을 가결시킬 경우에도 2001. 1. 9. 조례 개정 이후 위촉된 통장의 임기가 부당하게 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, 청원의 가결 후 현재 위촉된 통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부칙을 두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3. 7

보 고 자 : 김 찬 재

자치구별 통장 위·혜촉 조례규정 현황

【2005. 2. 23 기준】

연번	자치구명	정년	임기	연임회수	위촉방법
1	종로구	65	2	제한없음	동장추천 구청장 위촉
2	중구	65	2	"	"
3	용산구	62	2	"	"
4	성동구	60	2	1회	"
5	광진구	60 (기타)	2	2회	"
6	동대문구	60 (기타)	2	제한없음	"
7	종량구	60 (기타)	2	"	"
8	성북구	65 (기타)	2	"	"
9	강북구	65	2	"	"
10	도봉구	60 (기타)	2	"	"
11	노원구	60 (기타)	2	1회	동장 위촉
12	은평구	65	2	제한없음	동장추천 구청장 위촉
13	서대문구	63	2	2회	"
14	마포구	65	2	제한없음	"
15	양천구	60 (기타)	2	"	"
16	강서구	60 (기타)	2	"	"
17	구로구	65	2	"	"
18	금천구	63	2	2회	"
19	영등포구	60	2	1회	"
20	동작구	65 (기타)	2	제한없음	"
21	관악구	25세 이상	2	2회	"
22	서초구	60 (기타)	2	제한없음	"
23	강남구	60 (기타)	2	2회	동장 위촉
24	송파구	60 (기타)	2	제한없음	"
25	강동구	65	2	2회	"